

서울시복지재단과 공동체미디어 용산 FM 간의 교류 및 홍보협력을 위한 협약서

서울시복지재단과 공동체미디어 용산 FM 은 양 기관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방송 및 행사 수행, 정보공유 등의 교류 및 홍보협력을 위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
본 협약은 서울시복지재단과 공동체미디어 용산 FM 양 기관의 특성을 존중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교류 및 홍보협력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운영원칙)

- ①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- ②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 중 세부 사항이 필요하거나,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의 제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.

제 3 조 (교류 및 홍보협력 분야)

서울시복지재단과 공동체미디어 용산 FM 는 제 1 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협력하며 구체적인 수행 방법은 협의하여 추진한다.

- 공동방송 수행 및 공개방송행사의 공동개최
- 방송 미디어 제작
- 공동체 및 공동체 미디어 지식정보 등의 교류
- 공동 공개방송 개최, 각종 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
- 기타 양 기관이 합의한 관심 분야

제 4 조 (시설 장비 공동 활용)

본 협약에 의해 양 기관은 당해 기관의 교류 및 홍보협력 활동 수행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상대 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조건은 소유기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.

제 5 조 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거한 교류 및 홍보협력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사항 및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.

제 6 조 (지적재산권)

본 협약에 의거하여 수행된 교류 및 홍보협력 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7 조 (협약기간)

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5 년간 유효하며, 협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은 한, 매년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11월 21일

2017년 11월 21일

서울시복지재단

공동체미디어 용산 FM

대표이사 남기철

대표 박승희

남기철
(Handwritten signature)

박승희
(Handwritten signature)